



재정경제부

# 보도참고자료

Press Release

- 풍요로운 나라  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  
신뢰받는 재경부

보도일자	2006. 4.21(금) 10:00 부터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생 산 일	2006. 4.21	생산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유광열(T:02-2110-2301)	담 당 자	강부성 서기관(T:02-2110-2302)

## 제 목: '06.4.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

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4.21일(금) 08:3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

- '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', "06년 수해대비 추진 계획' 및 "06년 1/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'에 대해 논의

### 【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】

□ '05.12.1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는 '06.3월말 현재 5,825개 사업장(5인 이상 사업장의 1.2%)에서 도입

- 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(DC) 위주로 도입(10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 사업장의 96%)
- 이러한 도입추세는 제도 도입 초기(시행 4개월째)임을 감안할 경우 비교적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는 편이나,
  - 임의 가입제, 노사의 관망태도 등을 고려할 때,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이 필요

□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

-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(5월부터 연중 시행)하고,
  -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

- 제도의 확산을 이해 언론사, 퇴직연금사업자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층적 홍보를 추진
  - 특히, 각 부처 산하단체·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명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
- 「비정규직 보호대책」의 일환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(08),
  - \*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'08~'10년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음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§1)
  -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(연)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
- 주요 제도개선과제와 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전담연구 주체로서 '퇴직연금연구회'를 구성하여 운영

### 【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】

#### □ 단기대책(금년 우기대비 대책)

- 3월부터 매월 한강·낙동강 등 17개 국가하천 2,981km와 하천공사 현장 24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구간에 대해 우기전까지 보수·보강 완료
-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해 관련 업무매뉴얼 배포,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방대책 점검(4~5월), 비상상황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도상 및 현지 모의훈련을 실시(5월)
- 14개 다목적댐에 홍수기 가변제한수위를 설정·운영하여 홍수 조절 용량 확대(홍수조절용량 26억톤 → 35~52억톤)

#### □ 중·장기 대책

-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 100%를 목표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추진('06년 수계치수사업 등 총 1조 1,687억원 투입)

- 제방, 댐 이외 하천주변에 저류지 설치 등 유역전체가 홍수를 방어토록 하기 위해 '07년까지 '유역종합치수계획' 수립
- 전국 11개소에 강우레이더 설치, 홍수위험지도 제작 등 홍수 예보체계의 선진화를 2011년까지 완료 추진

### 【'06년도 1/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】

#### □ 1/4분기 조달사업 실적

- 연간 82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중 30%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1/4분기 조달실적이 전년대비 7.5% 증가한 11조원으로 집계('06년 연간계획 30조원의 37%)
  - \* 조달계획에 관한 주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(255개 공공기관)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분석.
-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계획 16조원 중 5.9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고,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전량 능력있는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
  - 우수제품 판로지원 규모 확대(06년 3,600억원) 등 혁신형 벤처 기업 지원 강화

#### □ 향후 추진과제

- 혁신형 중소·벤처기업의 우수 신기술제품 및 SW에 대한 단가 계약을 확대하고 가격산정 체계·방법도 마련하여 구매 활성화
- 시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관련하여 저가수주,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\*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공사관리의 점검체제를 강화
  - \*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기준 개선 방안(1단계 → 2단계)
    - 1단계 투찰가격을 객관적으로 심사 : (현재) 평균투찰가격 만을 기준 → (개선) 평균투찰가격 + 발주기관 조사가격을 동시에 고려
    - 2단계 저가심의회를 통한 주관적 심사 : 1단계 심사결과 '부적정'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

**【참고】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**

- 일시 · 장소 : 06.4.21(금) 08:30~,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
- 참석 : 총 15명
  - 경제부총리(주재), 농림부·복지부·환경부·노동부·여성가족부·기획예산처 장관, 공정거래위 위원장, 과기부·산자부·건교부·해수부차관, 금융감독위 부위원장, 조달청장, 국정홍보처 차장

**<별첨>**

-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노동부)
- 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(건설교통부)
- '06년 1/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(조달청)

※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, 실제 회의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.

**'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' 관련**

**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TEL : 2110-2273, 2274**

(과장 : 이호승, 서기관 : 이재선)

**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' 관련**

**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TEL : 2110-2319, 2320**

(과장 : 전병조, 서기관 : 이태훈)

**'06년 1/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' 관련**

**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TEL : 2110-2380, 2383**

(과장 : 장훈기, 사무관 : 이영직)

**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**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#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2006. 4. 21

노 동 부



# - 목 차 -

1. 추진현황 .....	1
2. 향후계획 .....	2

## <참고자료>

1. 퇴직연금제의 도입현황 .....	4
2. 도입현황분석 .....	5
3. 퇴직연금제의 주요내용 .....	6
4. 도입 배경 및 경과 .....	7
5.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비교 .....	8
6. 퇴직연금제의 기대효과 .....	9
7. 퇴직연금제에 대한 세제지원('05) .....	10

## 1. 추진 현황

- '06.3월말 현재 5,825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(5인 이상 사업장의 1.2%),
  - 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도입(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6%\*)
  - \* 퇴직연금 도입(규약 신고)사업장 설문조사 결과('06.2.15, 노동부)
  - 확정급여형(DB)보다는 확정기여형(DC) 위주로 도입
    - ※ 확정급여형(DC) 퇴직연금 : 근로자 퇴직 시 수령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짐
    - ※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: 급여의 수준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
  
- 이러한 도입추세는 제도 도입 초기(시행 4개월제)임을 감안할 경우 비교적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는 편이나,
  - 임의 가입제, 노사의 관망태도 등을 고려할 때,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이 필요
  
- 한편, 주로 영세사업장 위주로 도입하고 있어 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의 정책의도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,
  - 저출산·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적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공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도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

## 2. 향후 계획

### ① 적극적 홍보

- 언론사, 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층적 홍보\* 추진

\* 공중파 TV 기획방송(5~6월 방영), 한겨레신문 공동주최 노사정 토론회(4~5월), 유관기관 연계 퇴직연금 박람회 등 추진

- 유형별 모범사례집을 작성·배포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 여건에 적합한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

- 퇴직연금제 논의 활성화 및 전략사업장(산하단체공기업 등) 도입 촉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\* 추진

\* 우리부 산하단체 간담회(3.27), 퇴직연금사업자단체 간담회(3.30), 공기업 임원 간담회(5월) 등 추진

### ② 무료교육 및 컨설팅

-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 및 구체적 설계(규약 작성)에 대한 무료 교육 실시(총 60회, 3천명 대상)

-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원만한 도입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함

※ 현재 위탁교육기관 선정(생산성본부) 및 교육일정 확정, 5월부터 시행

- 특히, 중소 영세사업장(300인 미만)의 경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,

- 도입 절차에서 제도설계·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(50여개 업체, 1개소당 5백만원 기준)

※ 4월 중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5월 중 시행 예정

### ③ 공공부문 퇴직연금 도입 지원

- 민간부문의 관망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제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할 필요가 있음
  - 각 부처별로 정부산하단체 등에 퇴직연금 도입을 독려(노사 간담회, 설명회 개최)하고,
  - 우리부는 설명자료, 강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

### ④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준비

- 영세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적용방안 및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주요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전략 수립
  - 장단기 연구과제를 전담 수행할 체계적인 연구기구 구성
    - ※ 노동연구원을 주축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“퇴직연금연구회” 구성·운영 추진(4월중)
-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방안 필요
  - ※ 재경부,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상시적 협의체계 구축 추진

### ⑤ 4인 이하 사업장 등 적용 확대

- 「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」의 일환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(08),
  - \*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은 08~10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예정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)
-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(연)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

<붙임1>

### 퇴직연금제 도입현황

#### □ 제도 형태별 도입 사업장 수

- '06.3.말 현재 총 5,825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(지방관서 규약신고 기준)
  - 확정급여형(DB)보다는 확정기여형(DC) 또는 10인 미만 IRA 특례를 주로 도입(전체 92.7%)

구 분	합 계	확정급여형 (DB)	확정기여형 (DC)	IRA 특례
'06.3월말	5,825	426(7.3)	1,517(26)	3,882(66.7)
'06.2월말	3,110	245(7.9)	726(23.3)	2,139(68.8)
'06.1월말	1,586	159(10)	402(25.3)	1,025(64.6)
'05.12월말	389	84(21.6)	114(29.3)	191(49.1)

※ 단위: 사업장 수(누계).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(%)

#### □ 가입 근로자 수

-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41,654명이고, 사업장당 평균 가입자(근로자)는 8.2명임

※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주로 확정기여형과 특례 IRA를 도입하고 확정급여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주로 도입

구 분	합 계	확정급여형 (DB)	확정기여형 (DC)	IRA 특례
가입자 수	41,654	8,692 (20.9%)	17,030 (40.9%)	15,932 (38.2%)
사업장당 가입자수	8.2명 (5,090개소)	31.8명 (277개소)	18.3명 (931개소)	4.1명 (3,882개소)
적립금(억원)	527.3	171.9 (32.6%)	222.8 (42.6%)	132.6 (24.8%)

※ '06.3월말 퇴직연금사업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

<붙임2>

**도입현황 분석**

□ 퇴직연금규약을 신고('06.2.15 현재)한 총 6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실태를 분석한 결과(사업장 대상 설문조사),

○ 사업장 규모면에서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97%를 차지하여 영세사업장 위주로 도입

**<사업장 규모별 현황>**

계	5인미만	5~9인	10~29인	30~99인	100~299인	300~499인	500인이상
687(개소)	20	93	393	157	21	0	3
100(%)	2.9	13.5	57.2	22.9	3.1	0.0	0.4

○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연봉제 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54%를 차지

※ '05.8월 노동부 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 중 48.4%가 연봉제 도입

**<임금체계별 현황>**

계	연봉제	연공급(호봉)제	직무급제	기 타
687	371	220	52	44
100%	54.0%	32.0%	7.6%	6.4%

○ 도입 과정에서는 사용자측이 제안하는 경우가 전체의 73%임

**<도입 제안 현황>**

계	사용자 제안	근로자 제안	기타제안
687	499	133	55
100%	72.6%	19.4%	8.0%

<붙임3 >

## 퇴직연금제의 주요내용

### ① 개념

-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한 후, 근로자 퇴직 시 연금(또는 일시금)으로 지급하는 제도
  - 확정급여형(DB)과 확정기여형(DC) 두 가지 형태가 있음
    - ※ 확정급여형 :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(사용자가 적립금 운용한 후 급여지급의 최종 책임을 짐)
    - ※ 확정기여형 :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(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 따라 변동)

### ② 실시 여부 및 형태 선택 : 노사 자율선택

- 기존의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인지는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,
  - 퇴직금제,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선택토록 할 수 있음

### ③ 급여 및 부담 :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

- 근로자의 급여(또는 사용자의 부담)는 법정 최저 수준 이상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
  - ※ 확정급여형의 급여 :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(현행 퇴직금과 동일)
  - ※ 확정기여형의 부담 :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

### ④ 금융기관(퇴직연금사업자)에 위탁 관리

-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한 퇴직연금제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
  - ※ 부담금 수령 및 급여의 지급, 적립금 보관·관리 및 기록 등의 업무 위탁

## <붙임4>

### 도입배경 및 경과

#### □ 도입배경

- 현행 퇴직금제도는 '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,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,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
- 또한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
  - ※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만 적용(근로자의 48%만 수혜)
-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연금제도로 전환

#### □ 도입경과(퇴직금제 개선 논의경과)

- '86~'98년 :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실시
- '98년 : 노사정위원회 의제 채택(퇴직금제도 개선)
- '01.7월 ~ '03.7월 : 노사정위원회 논의
  -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, 세부 사항에 대한 노사합의는 안됨
-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토대로 정부 입법 추진
  - '04.12.29 국회 통과, '05.1.27 공포
  - 하위 법령 제정 완료(시행령'05.8.19, 시행규칙'05.9.22)
- '05.12.1 퇴직연금제도 시행

<붙임5>

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비교

구 분	확정기여형 (Defined Contribution)	확정급여형 (Defined Benefit)
개 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</li> <li>-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</li> <li>-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(연금 55세 이상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·내용을 약정</li> <li>-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</li> <li>-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(연금 55세 이상)</li> </ul>
기 여 금	확정(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0이상)	산출기초율(운용 수익률, 승급률 등) 변경시 변동
급 여	근로자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	확정(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)
급여수준 비 교	임금인상률 > 적립금 운용수익률 : 확정급여형이 더 많음 임금인상률 < 적립금 운용수익률 : 확정기여형이 더 많음	
위험부담	물가,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	물가,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
저금보장	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용지도	의무적립금제도(퇴직부채 60%) 건전성 감독 등
기업부담	축소 불가	축소 가능(수익률이 높을 경우)
통산제도	용 이	어려움 (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)
선호대상	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	장기근속자
적합대상	연봉제, 중소기업	대기업, 기존 사외적립기업

<붙임6>

퇴직연금제의 기대효과

근로자 입장

-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직장을 옮겨 다녀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여 노후소득의 확충 및 다양화가 가능함
-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의 사외적립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강화됨
-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이연(EET과세 체계)혜택으로 근로자 실질 소득이 증가함

사업주 입장

- 매년(또는 매월)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부담의 평준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
- 임금피크제 및 연봉제 실시가 용이하여 인사·노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(확정기여형)

거시경제 측면

-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, 과세이연으로 장기적 세원 확보가 가능하여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
-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

< 붙임7 >

퇴직연금제에 대한 세제지원('05)

□ 소득세제

- 근로자로 하여금 기존 퇴직(일시)금 대신에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공제폭 확대함
  -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(600만원→900만원) 및 연금소득 구간별 공제액 인상(40~50%)
  - 퇴직(일시)금에 대한 소득공제액 인하(50%→45%)
- 확정기여형의 근로자추가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
  - 개인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함(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
□ 법인세제(법인세법 시행령 개정)

-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
  - 퇴직급여추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퇴직금제(퇴직보험)와 동일
-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(장부상의 부채)의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(40%→30%)
  -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'07~'08년 35%, '09년 30%로 단계적 축소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# 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

2006. 4. 21

건설교통부

# - 차 례 -

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1
-------------------	---

1. 현 황 .....	1
--------------	---

2. 문제점 .....	3
--------------	---

II. 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단기대책 .....	4
---------------	---

2. 중·장기대책 .....	8
-----------------	---

III. 과제별 추진계획 .....	10
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< 참고자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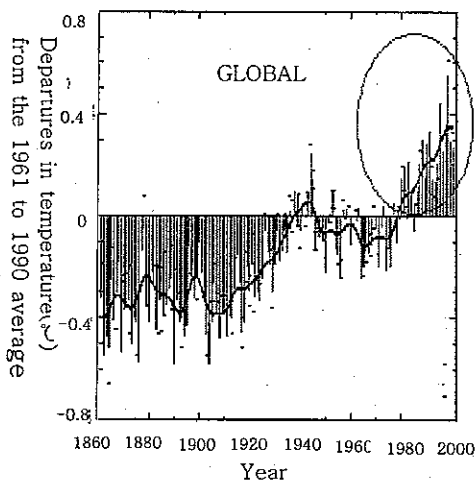
1. 비상근무 체제 .....	11
------------------	----

2. '06년 치수사업 투입예산 현황 .....	1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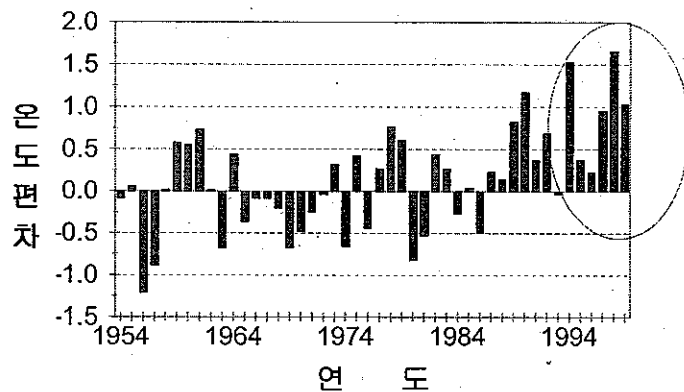
# I. 현황 및 문제점

## 1. 현 황

- 최근 지구 온난화, 엘니뇨 현상 등 범지구적 기후변화가 뚜렷
- 최근 140년간 약 0.6도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'80년대 이후 상승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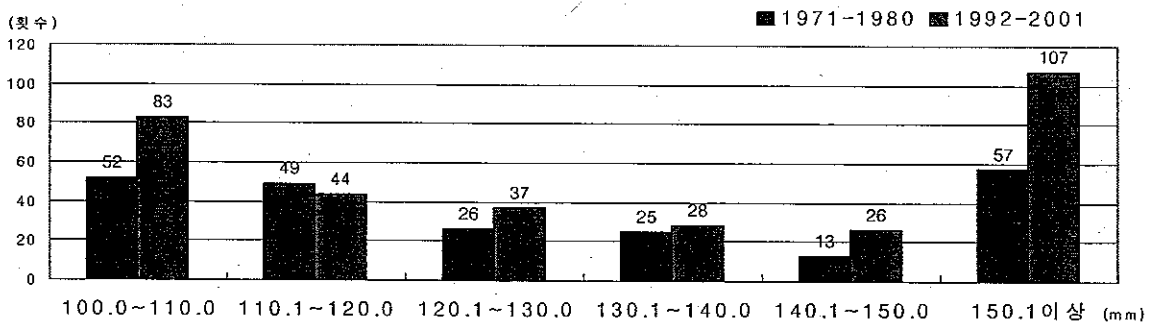


< 지구 온도변화 >



< 우리나라 온도변화 >

- 최근 10년간,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1.5배 증가('71~'80년간 222회 ⇒ '92~'01년간 325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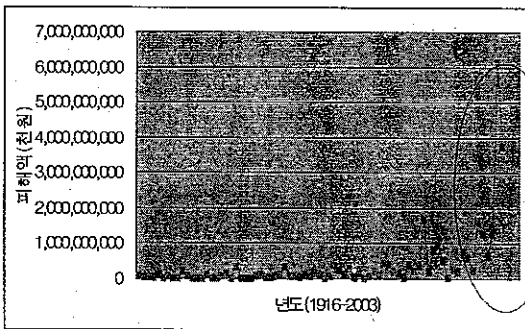


- 특히, '02.8.31일 강릉지역 1일강우량 870.5mm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의 약 70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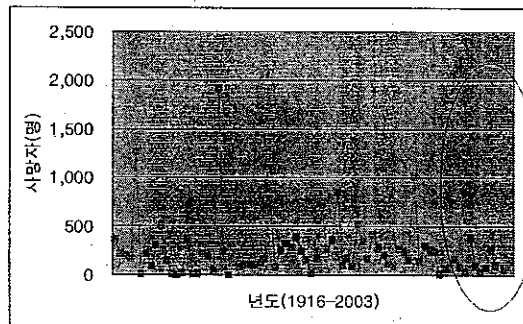
□ 지속적인 치수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증가

○ 최근 10여년간 홍수피해가 '70~'80년대에 비해 4.5배 증가(연평균 1조 4,200억원)하고, 특히 태풍 루사가 발생한 '02년에는 6조 6,331억원의 최대피해 발생

○ 반면 인명피해는 '70~'80년대에 비해 1/2이하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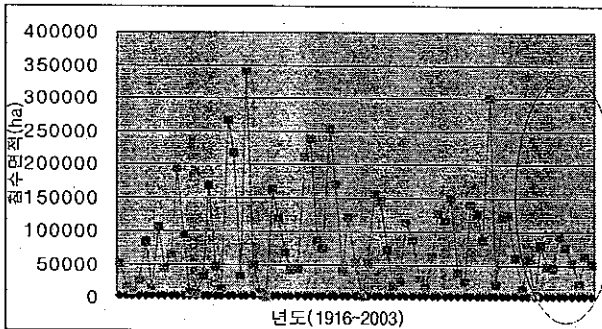


< 재산피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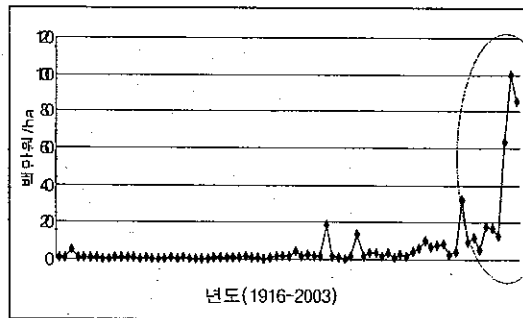


< 인명피해 >

○ 침수면적은 감소추세이나 하천변 도시화 등으로 침수면적당 피해액은 '70~'80년대에 비해 8배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



< 침수면적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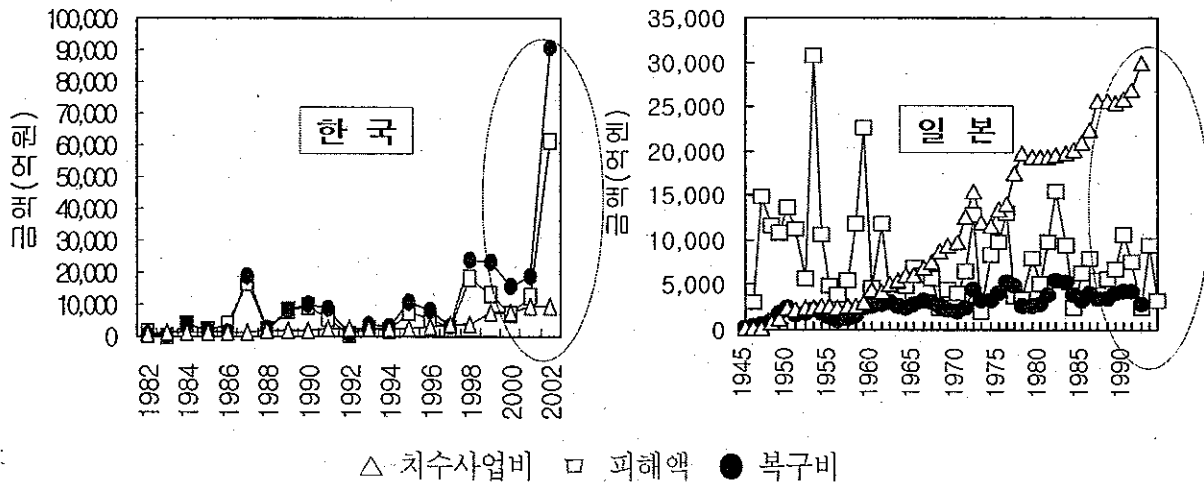
< 침수면적당 피해 >

## 2. 문제점

### □ 소규모 예방투자로 복구비 지출이 과다

-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1/4 수준에 불과하며, 소규모 예방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

\* 일본의 경우,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4배 수준이며, 치수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



< 우리나라와 일본의 홍수피해와 치수사업비 추이 >

### □ 치수사업의 투자부족으로 홍수방어시설 확충 지연

- 하천제방은 국가하천의 경우 '60년대부터 축조되어 노후화되었고, 지방하천의 경우 개수율이 저조

\* 하천개수율('05기준) : 국가하천 98%, 지방1급하천 89%, 지방2급하천 78%

-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목적댐의 경우 환경영향 등으로 인한 반대로 신규건설 추진이 부진

\* '02 태풍 루사시 댐홍수조절효과(하류지역 수위저감)

· 한강(인도교) 2.42m, 낙동강(진동) 4.73m, 금강(공주) 7.11m

## II. '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

---

### 1. 단기대책(금년 우기대비 대책)

□ '02년 『루사』, '03년 『매미』 이후 대규모 태풍 및 호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금년 여름의 경우 이상기후 등에 의한 대형 수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철저

○ 수해대책기간(5.15~10.15)에 앞서 4.15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한발 앞선(One Step Ahead) 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

\* 기상·홍수 상황에 따라 3단계(준비, 경계, 비상체제) 비상근무

□ 국가하천시설물을 지속점검하여 취약구간 발굴·조치

○ 경미한 사항은 우기전까지 보수·보강을 완료하고,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은 우기전까지 임시조치 후 항구조치

- 3월중 한강·낙동강 등 17개 국가하천 2,981km와 하천 공사 현장 245개소에 대해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1차 안전점검 실시

\* 경미한 사항(제방 비탈 훼손, 호안 기초 세굴 등) : 127건  
근본대책 사항(배수문 노후, 옹벽 균열 등) : 5건

□ 수방대책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(4~5월)

- 지방국토관리청(5개), 홍수통제소(4개), 광역지자체(15개), 수자원공사와 수해대책 관계관회의 개최(4.18)

\* 주요논의사항 : 수방대책 추진상황, 상호 지원체계 협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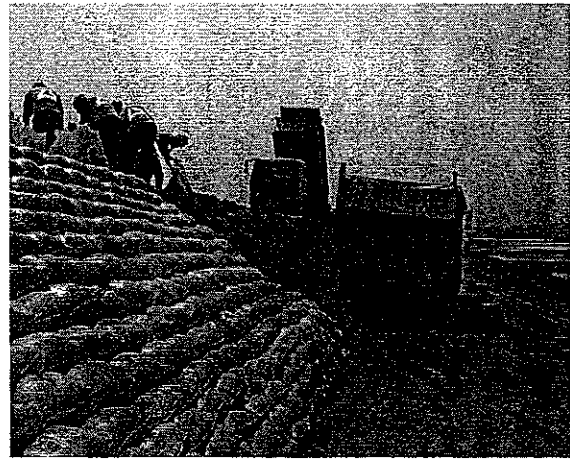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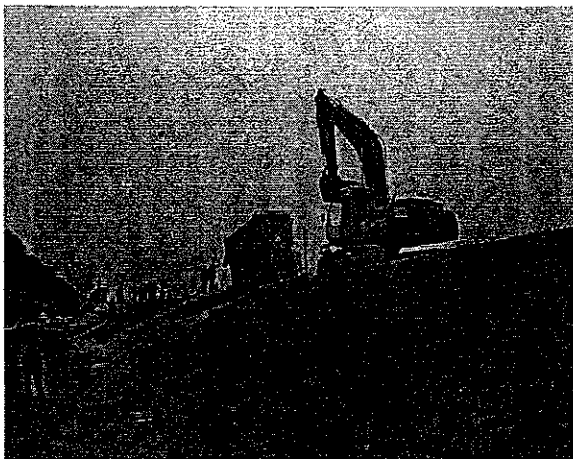
- 수해취약 하천인 낙동강, 임진강 등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및 하천별로 관계관회의 개최

□ 비상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모의훈련 실시(5월)

-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, 지자체 합동으로 제방붕괴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응급복구 등을 내용으로 도상 및 현지 모의훈련 실시

- 도상훈련은 비상소집, 수방자재 비축, 동원계획의 적정 등에 대한 문서와 통신 등에 의한 점검훈련 실시

- 현지 모의훈련은 실제 장비와 자재, 인력을 동원하여 현지에서 응급복구, 주민대피 전파 등 실시



< 현지 모의훈련 현황('05.5) >

- 홍수통제소 별로 하천수위 상승을 가정한 신속·정확한 홍수예보발령 등 홍수통제 모의훈련 실시

- 과거 홍수를 재현하여 홍수예보, 댐방류량 조절에 의한 홍수통제 등에 대해 훈련 실시

\* '05년에는 4개 홍수통제소에서 '02년 태풍 "루사" 재현 훈련 실시

□ 홍수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(5월)

-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별로 수방자재·장비 확보, 인력 동원계획,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
- 홍수통제소별로 장비점검 및 가동, 홍수예보, 댐 홍수조절, 홍수정보 전달 체계 등 수립

< 수방자재·장비·인력 동원계획 >

구 분	자 재	장 비	인 력
계 (5개청)	토석 139,100m <sup>3</sup> PP포대 122,200매	운반장비 1,764대 굴삭기 891대	2,440인
서울청	토석 10,820m <sup>3</sup> PP포대 23,100매	운반장비 500대 굴삭기 222대	350인
원주청	토석 29,500m <sup>3</sup> PP포대 17,700매	운반장비 202대 굴삭기 103대	480인
대전청	토석 10,000m <sup>3</sup> PP포대 37,900매	운반장비 124대 굴삭기 106대	440인
익산청	토석 15,780m <sup>3</sup> PP포대 21,600매	운반장비 208대, 굴삭기 168대	440인
부산청	토석 73,000m <sup>3</sup> PP포대 21,900매	운반장비 730대 굴삭기 292대	730인

□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해관련  
업무매뉴얼 보완 작성·배포(5월)

- 기상·홍수상황별 상황관리 요령,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, 취약시설 점검방법 등을 규정

□ 홍수대책상황실 설치·운영(5~10월)

- 기상·홍수 상황에 따라 3단계(준비, 경계, 비상체제)로 구분하여 본부 및 소속·산하 전기관에서 비상근무 실시

□ 다목적댐 홍수조절 능력 증대(6~9월)

- 14개 다목적댐에 홍수기 가변제한수위를 설정·운영하여 홍수조절용량 확대(홍수조절용량 26억톤 → 35~52억톤)

▽ 계획홍수위(FWL)		
▽ 제한수위(RWL)	홍수조절 용량 (35~52억톤)	홍수조절 전용용량 (26억톤)
상시만수위(NHWL)		유효저수용량
▽ 저수위(LWL)		
▽ 사수위(DWL)	불용 용량	비활용용량 (비상용수공급량) 사수량

< 홍수조절용량 확대 >

## 2. 중·장기 대책

□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 100%를 목표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

○ 금년에는 수계치수사업 등 총 1조 1,687억원을 투입하여 694km의 하천정비 추진중

\* 하천개수율 '05년 80% → '06년 82%

○ 특히, 수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조기 개수 등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조정 계획

\* 국가하천 비율 : 한국 10%, 일본 61%

□ 홍수조절 등을 위한 다목적댐 신규건설 및 이상강우에 대비하여 기존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

○ 중·소형 신규댐으로 화북(경북 군위), 부항(경북 김천), 성덕댐(경북 청송) 및 군남홍수조절지(경기 연천) 건설을 적극 추진중

○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등 24개댐에 대해 '10년 완료목표로 금년에는 소양강댐 등 10개댐 공사와 안동댐 등 2개댐 설계 중

□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현재의 굴포천임시방수로(폭20m)를 단계적으로 확장

○ 금년에는 우선 40m로 확장하고 '11년까지 80m로 확장

- 제방, 댐 이외에도 하천주변에 저류지 설치 등 유역전체가 홍수를 방어토록 하기 위해 『유역종합치수계획』 수립·추진
  - 계획이 수립된 낙동강유역은 수방시설 확충 등 종합 치수대책을 적극 추진
  - 한강 등 나머지 11개 유역은 '07년까지 계획수립 완료
  
- 홍수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예보체계의 선진화를 '11년까지 완료 추진
  - 신속·정확한 강우관측과 홍수예보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전국에 11개소 설치(금년에는 낙동강, 영산강에 공사 착수)
  - 홍수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 제작(총 2,300km, '05까지 123km, '06 36km)
  - 홍수상황 감시와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하천에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(총 49개소, '05까지 27개소, '06 12개소) 및 하천 정보전광표지 도입(금년에 연구용역)
  
-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등으로 도시지역 수해가 빈발함에 따라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홍수관리제도 마련
  - 우수침투저해 행위 규제, 저류지 설치 의무화 등 수방시설 촉진 등의 내용으로 연구용역중(국토연구원)이며, 이를 토대로 '07년까지 법제화 추진

### Ⅲ. 과제별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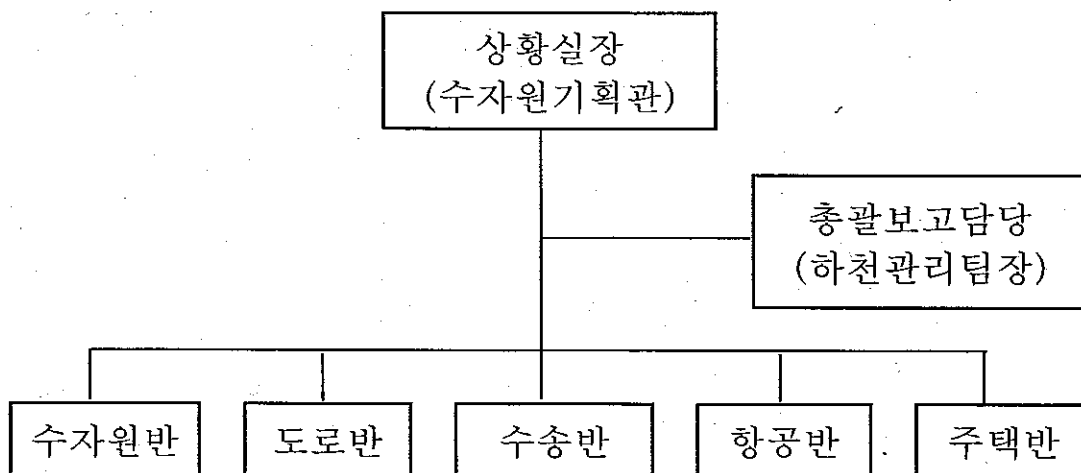
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<b>1. 단기대책</b>		
① 우기대비 국가하천 시설물 일체점검	'06.3~10	건교부 지자체
② 수해대비 관계기관회의 개최	'06.4~5	건교부 지자체 수공
③ 모의훈련 실시	'06.5	건교부
④ 비상대응계획 수립	'06.5	건교부
⑤ 수해관련 업무매뉴얼 배포	'06.5	건교부
⑥ 홍수대책상황실 설치·운영	'06.5~10	건교부
⑦ 다목적댐 홍수조절능력 증대	'06.6~9	건교부 수공
<b>2. 중·장기대책</b>		
① 하천정비사업 추진	계속	건교부 지자체
② 신규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	'00~'11	건교부 수공
③ 굴포천 임시방수로 확장	'04~'08	건교부
④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	'03~'07	건교부
⑤ 홍수예보체계 선진화	'01~'11	건교부
⑥ 도시홍수관리제도 수립	'05~'07	건교부

## <참고 1> 비상근무 체제

### □ 비상근무 체제

- 하천, 도로, 철도, 항공 등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시설 수해 대책 관리
    - 홍수대책상황실(실장 : 수자원기획관) 운영
  - 기상 및 홍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본부 및 소속·산하 전 기관에서 비상근무 실시
    - 준비체제 : 호우주의보·경보, 총 6명(수자원 2, 기타 4) 근무
    - 경계체제 : 홍수주의보·경보, 총 18명(수자원 6, 기타 12) 근무
    - 비상체제 : 전국적 홍수 발생시, 총 30명(수자원 10, 기타 20) 근무
- ※ 호우주의보 : 12시간 강수량이 80mm 이상 예상시  
호우 경보 : 12시간 강수량이 150mm 이상 예상시  
홍수주의보·경보 : 하천 수위에 따라 발령

### □ 홍수대책상황실 조직도



<참고 2> '06년 치수사업 투입예산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기간	총사업비	2004까지	2005	2006	장래
계		209,835	61,511	11,942	11,687	124,695
국가하천정비	'95~'11	40,646	13,050	3,100	3,200	21,596
수계치수	'89~'11	92,700	32,349	4,404	3,280	52,667
하천재해예방	'99~'11	64,996	13,692	2,769	3,200	43,335
굴포천치수	'04~'08	7,084	746	800	800	4,738
치수연구개발	계속	-	-	180	230	-
하천편입토지보상	'01~'07	2,270	938	350	532	450
지하수조사및관리	계속	937	180	60	66	631
지하수관측망설치운영	계속	481	307	61	25	88
수문조사 및 홍수에보등	계속	-	95	198	266	1,031
홍수통제소신축	'05~'09	187	-	2	70	115
하천지도전산화	'99~'12	414	136	12	12	254
수자원정보관리	계속	120	18	6	6	90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2006년 1/4분기  
정부조달시장 동향

2006. 4. 21

조 달 청

# 《 목 차 》

## I. 2006년도 1/4분기 정부조달 동향 .....1

1. 공공조달 규모 .....1

2. 조달사업 동향 .....1

3. 중소기업 지원 동향 .....3

4. 비축사업 추진 동향 .....4

## II. 주요 현안과제 .....5

1. 신기술제품·SW 구매 활성화 .....5

2. 최저가 낙찰제 확대 .....6

# I. 2006년도 1/4분기 정부조달 동향

## 1. 공공조달 규모

□ 2005년도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82조원 수준이며, 종류별로는 물품·용역 35.1조원(43%), 시설공사 46.5조원(57%) 규모

○ 이 중 조달청은 28% 수준인 23조원 상당을 담당

◆ 2005년도 공공조달 규모 대비 조달청 비중 (단위: 억원)

구분	공공부문(A)	조달청(B)	비율(B/A)
계	816,024	230,679	28.3%
물품·용역	350,858	103,751	29.6%
시설공사	465,166	126,928	27.3%

\* 공공조달 규모 산정시 제외 대상인 경제정책 지원사업 54,711억 원 (시설공사 총사업비 검토 42,581억, 원자재 비축 12,130억)을 포함할 경우, 2005년도 조달청 전체 사업규모는 285,390억 원

## 2. 조달사업 동향

□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(5%)과 재정규모 증가율(5.9%)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5.6% 증가한 30조원을 조달할 계획

◆ 2006년도 조달청 사업계획 (단위: 억원)

구분	'05년 실적(A)	'06년 계획(B)	증가율(B/A)
계	285,390 (230,679)	301,300 (235,800)	5.6% (2.2%)
물품·용역	103,751 (103,751)	109,400 (109,400)	5.4%
시설공사	169,509 (126,928)	179,900 (126,400)	6.1%
원자재 비축	12,130 (-)	12,000 (-)	△1.1%

\* ( )는 공공조달규모 산정기준으로 경제정책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규모

□ 1/4분기에 총 11조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전년 동기 대비 7.5% 증가한 연간계획의 36.8%를 조기 집행

○ 금년도 연간 조달계획에 관한 주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공공기관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

- '06 구매예시 : 예산·구매방법·규격·예상발주시기 등 제공
- 조달업무 설명회 개최(3월) : 255개 공공기관

○ 사업별로는 시설공사 계약과 비축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.5%, 41.6% 증가하였으나, 물품·용역분야는 다소 저조

- 시설공사 분야는 특히 공사 계약 실적이 대폭 증가\*하여 1/4분기에 연간 계획 대비 48.3% 달성

\* 이는 작년에 이월된 최저가 및 턴키대상공사, 계속비공사로 전환된 일부 장기계약공사의 계약이 연초에 체결된 것에 기인

- 물품·용역 분야는 계약방식을 변경\*하는 과정 중에 있고 종합쇼핑몰 통합 구축을 위한 준비로 다소 실적 저조

\* (종전) 총액·단가계약 → (개선) 다수공급자계약방식 추가

◆ 2006년도 1/4분기 조달사업 집행실적 (단위 : 억원)

구 분	연간계획 (A)	전년동기 실적(B)	집행실적 (C)	진도(%)	
				계획대비 (C/A)	전년대비 (C/B)
총 계	301,300	103,270	110,995	36.8	107.5
물품·용역	109,400	22,153	21,612	19.8	97.6
시설공사	179,900	79,297	86,805	48.3	109.5
원자재 비축	12,000	1,820	2,578	21.5	141.6

### 3. 중소기업 지원 동향

- 금년에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및 건설공사를 조달할 계획(정부전체 목표 56조원의 28% 수준)
- 1/4분기에 5.9조원 상당을 지원하여 연간계획의 36.8% 달성하였으며, 이는 정부전체 목표의 10%에 해당

◆ 2006년도 1/4분기 중소기업 지원실적 (단위:억원)

연간계획 (A)	전년동기 실적(B)	집행실적 (C)	진도(%)	
			계획대비 (C/A)	전년대비 (C/B)
161,320	57,798	59,295	36.8	102.6

- 정부조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중소·벤처기업 육성

- 단체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\*하고, 능력있는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

- 무리한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운영

\* 단체수의계약 폐지품목 수(개) : (05) 23 → (06) 31 → (07) 95(완전 폐지)

- 우수제품제도 등을 활용하여 혁신형 벤처기업 지원 강화

- 우수제품 판로지원 규모 확대(05년 3,409억원 → 06년 3,600억원)

- 나라장터에 신기술 및 GS제품 전용 테마쇼핑몰 운영

- 미국 GSA EXPO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정부조달시장 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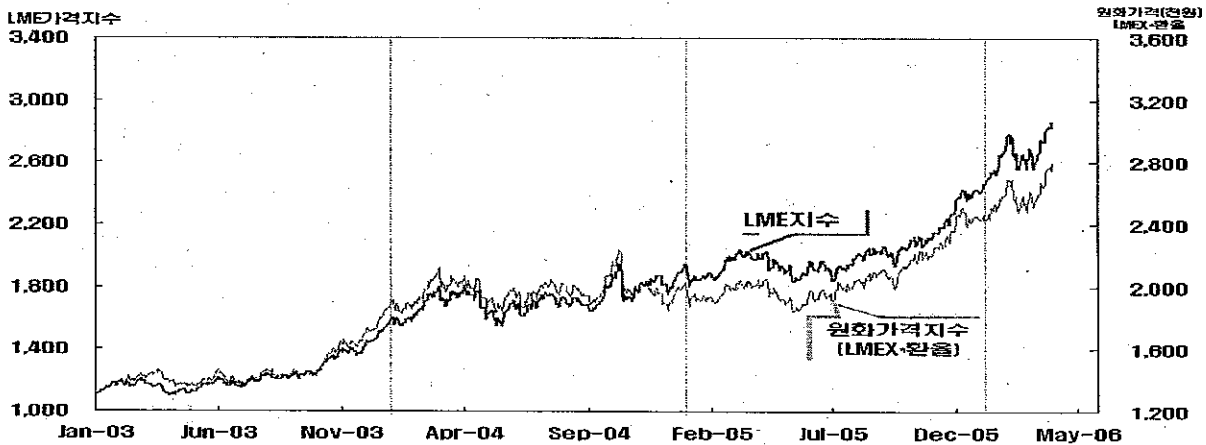
## 4. 비축사업 추진 동향

□ 전반적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여년 만에 최고치 기록

○ 알루미늄,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'03년 하반기부터 지속 상승하여 금년 3월말 현재 '03년 대비 평균 2.3배 상승  
\* LME지수 : 03년 1,231 → 06.3월말 2,826

○ 그간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익실현으로 하락가능성도 있으나, 재고감소·공급차질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투기자금 유입을 감안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<국제원자재 가격동향>



\* LME지수 : 알루미늄 등 6개 비철금속의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가격지수

□ 1/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.6% 증가한 1,866억원 상당의 비축원자재를 공급

○ 최근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

○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·프리미엄 계약, 선물·옵션거래 등 구매기법을 다양화

\* 3월말 현재 원자재 비축재고 : 알루미늄 등 14종 13만톤(2,600억원)

## II. 주요 현안과제

- ◆ 업무설명회, 민원실(콜센터)·일선부서 등을 통해 공공기관·조달업체 등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
  - \* 업무설명회(2.27~3.9, 11개 지방청 권역)
    - 공공기관(255), 조달업체(677) 참여, 애로·건의사항 총198건 수렴 조치

### 1. 신기술제품·SW 구매 활성화

업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실질적인 의무구매 활성화 및 공공구매계획 등의 정보공개 확대</li> <li>· 신기술·SW에 대한 적정가격 책정</li> </ul>
공 공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및 민원부담</li> <li>·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사용 기피</li> </ul>

#### 〈향후 추진계획〉

- 조달청을 통한 직접 판로지원 확대
  - 혁신형 중소기업 제품, 우수SW에 대한 단가계약을 확대하고, 테마숍을 개설하여 특화된 마케팅 場으로 제공
- 공공기관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적정가격 산정 체계·방법을 마련
  - 단기적으로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·신용상태·품질검사 결과 등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담당자의 구매부담 완화
- 신기술·국산 우수SW의 제값받기 환경을 선도
  - 조달단가 결정시 최저가 중심에서 최빈가·가중평균 등을 활용하고 신기술·SW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회 운영

#### 협조사항

- 국내 영세 SW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IT관련 발주시 구매부분(HW)과 개발부분(SW)을 분리하여 구매 추진
- 신기술제품·우수SW의 적정가격 산정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급적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

## 2. 최저가 낙찰제 확대

업 계	· 저가 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우려
공 공 기 관	· 부실시공 개연성 · 입찰서에 대한 주관적 심사의 어려움

### <향후 추진계획>

-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계약이행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기준을 개선(1단계 → 2단계)\*
  - \* 1단계 투찰가격을 객관적으로 심사 : (현재) 평균투찰가격 만을 기준 → (개선) 평균투찰가격 + 발주기관 조사가격을 동시에 고려
  - \* 2단계 저가심의회를 통한 주관적 심사 : 1단계 심사결과 '부적정' 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
-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저가심의 기준, 저가심의회 운영 절차를 마련 중
  - 5월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, 시뮬레이션 등 사전준비 작업 완료
  - 전문인력 부족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에 대한 초기 대행서비스 강화
-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해 공사이행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체제 운영

#### 협조사항

- 자체발주시 향후 법령에 따라 설치하게 될 저가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
-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서 적정성 심사업무를 수행